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3.

발 의 자 : 이정현 · 조인철 · 허성무
김우영 · 한민수 · 송기현
한준호 · 김의겸 · 윤준병
이광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,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.

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그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·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·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

를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8호)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 중 “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“간첩체포등의 사유”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”을 “보국훈장을 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목에 1) 및 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)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, 군인·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·근무한 사람
- 2)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“간첩체포등의 사유”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1. ~ 7. (생략) 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(생략)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<u>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“간첩체포등의 사유”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</u>	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보 <u>국훈장을 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<u><단서 삭제></u>

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
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
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
만 해당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9. ~ 18. (생 략)

1)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
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
서, 군인·예비군부대 지휘
관으로 20년 이상 복무·
근무한 사람

2)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사유(이하 “간첩체포
등의 사유”라 한다)로 보
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
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
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
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
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
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
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
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
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
사람만 해당한다.

9. ~ 1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